

2023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시행 안내

1. 외국어시험 시행근거

- 학칙 제30조(자격시험)에 근거하여 학위를 청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한다.

2. 외국어시험 주요변경 사항

- 2023년부터 한국인 대상 대면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대체인정[①외국어 방학 중 특별강좌 이수(P취득) 및 ②외부기관 영어 공인 어학성적 기준 점수 이상 취득]으로 합격처리함.

※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 해당사항 없음

3.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및 신청대상

구분			신청대상	
			한국인	외국인
대체	공인 어학성적	영어(TOEIC 등)	해당	비해당
		한국어(TOPIK)	비해당	해당
	대체강좌 수강	영어 특별강좌[방학 중]	해당	비해당

4. 외국어시험 대체 인정 종류 세부현황

가. 영어(한국인 대상) 대체인정

외국어시험 특별강좌[방학중] 수강

- 1)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
- 2) 시행시기: 방학기간 중(신청시기 6월초, 12월초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통합공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) ※ 별도 수강료 있음.
- 3) 합격기준: 70점 이상(100점 만점)

외부기관 공인 영어 능력 검증시험

- 1)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한국인
- 2) 접수기간: 학기 중 수시 접수
- 3) 대체인정 기준(점수)

구분		인정점수
영어	TOEIC	750점 이상
	TOEFL(iBT)	72점 이상
	TEPS	2급(327점)이상
	IELTS	6.0점 이상

※ 영어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응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만 인정

나. 한국어(외국인 대상) 대체인정

□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

- 1) 신청자격: 대학원 재적(재학·휴학)생 및 수료자 중 외국인
- 2) 접수기간: 학기 중 수시 접수
- 3)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기준

학과계열	인문사회	자연과학/공학/예·체능계열
인정기준(등급)	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이상	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이상

5. 외국어(영어 및 한국어)시험 외부기관 공인 성적 제출 절차

- 1) 학생 제출방법: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해당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
- 2) 대학원 학과 제출절차: 외국어 시험 대체인정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재로 대학원교학팀(통합)에 제출

[별첨]

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신청서

■ 학생구분(해당사항을 '□'안에 '√'로 표기하시오)

한국인학생

외국인학생

■ 학적사항

학 과	과정	학기	학 번	성 명
생년월일	년 월 일		휴대전화	

■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신청사항(해당사항을 '□'안에 '√'로 표기하시오)

공인어학시험명			
어 학 점 수(급)		응 시 일 자	

붙임 해당 어학 성적증명서 1부.

대학원 학칙 제30조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의거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자

(인/서명)

학 과 장

(인/서명)

대학원장 귀하

- ▷신청자 제출방법: 본 서식을 작성하고, 어학시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
- ▷학과 제출절차: 접수한 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전자결재로 대학원교학팀(통합)에 제출